#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2012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3 차 변경계획안

##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<br>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12년 8월 31일
- 제출일자: 2012년 9월 4일


## 3. 제안이유

○ 가칭)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예졍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목적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-공유재산 및 물풉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${ }^{-}$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콴러계획 제 3 차 변경계획을 수 립하여 충쳥북도의희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4. 주요내용

ㅁ당초춰득
(단위 : $\mathrm{m}^{2}$, 천원)

| 재 산 의 표 시 |  |  |  | $\begin{gathered} \text { 추정금액 } \\ \text { (천원) } \end{gathered}$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취 득 } \\ & \text { 시 기 } \end{aligned}$ | 추득 사유 | $\begin{array}{\|l\|} \text { 추 } \text { 득 } \\ \text { 소유자 } \end{array}$ | 비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기관명 | 구분 | 소재지 | 수량 ( $\mathrm{m}^{2}$ ) |  |  |  |  |  |
| $\left\lvert\, \begin{gathered} \text { 충청북도 } \\ \text { 교 육 청 } \end{gathered}\right.$ | 토지 | $\left\|\begin{array}{c} \text { 제주시 } \\ \text { 도두일동 } \\ 2540-1 \text { 외 } \end{array}\right\|$ | 7,352 | 2,640,000 | $\begin{aligned} & 2012 . \\ & \text { 상반기 } \end{aligned}$ | 가칭) 충청북도제주교육 수련원 설립에 따른 부지 취득 | 교육감 |  |


| 재 산 의 표 시 |  |  |  | 추정금액 <br> (천원)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취 득 } \\ & \text { 시 기 } \end{aligned}$ | 추득 사유 | $\begin{aligned} & \text { 취 득 } \\ & \text { 소유자 } \end{aligned}$ | 비고 |
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 :---: |
| 기관명 | 구분 | 소재지 | 수량( $\mathrm{m}^{2}$ ) |  |  |  |  |  |
| 충청북도 교 육 청 | 토지 | 제주시 <br> 애월읍 <br> 곽지리 <br> 1622-1 | 7,934 | 2,640,000 | $\begin{gathered} 2012 . \\ \text { 하반기 } \end{gathered}$ | 가칭)충청북도제주교육 수련원 설립부지 변경 취득 | 교육감 | 도면1 |

## ㅁ 변경사유

- 항공소음과 제주공항의 24 시간 공항체제로의 변경예정 등에 따라 수련시 설로 부적합하여 모래해변과 연계한 해양수련활동 등이 가능한 위치로 변 경하여 취득하고자 함


## 5. 검 토의 견

O (가칭)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제주시 도두일동 2540-1번지 외에 $7,352 \mathrm{~m}^{2}$ (추정금액 $2,640,000$ 천원)를 취득에서 제주시 애월읍 곽지 리 1622-1번지로 하여 $7,934 \mathrm{~m}^{2}$ (추정금액 $2,640,000$ 천원)를 변경취득하는 것으로 당초보다 $582 \mathrm{~m}^{2}$ 가 증가됨,
○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공항근접에 따라 소음으로 위치변경 제안 등에 따라 수련원 시설로 부적합하여 모래해변과 연계한 해양수련활동 등이 가능한 위치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한 결정으로 사료됨.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## $\square$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 10 조（공유재산의 관리계획）（1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（이하＂관리계 획＂이라 한다）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．관리계획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．＜개정 2010．2．4＞
（2）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，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．
（3）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39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．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은 것으로 본다．
［전문개정 2008．12．26］

## $\square$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

제 7 조（공유재산의 관리계획）（1）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（이하＂관리계획＂이라 한다）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［매입，기부채납，무 상 양수，환지（換地），무상 귀속，교환，건물의 신축•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，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．이하 이 조에서 같다］및 처분（매각，양 여，교환，무상 귀속，건물의 멸실，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．이하 이 조에서 같다）으로 한다．

1． 1 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．이 경 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［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（算定）한 금액

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 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•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둥 사업비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: 20 억원 (시•군•자치구의 경우에는 10 억원)
나. 처분의 경우: 10 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2. 토지의 경우 1 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. 취득의 경우: 1 건당 6 천제곱미터 (시•군•자치구의 경우에는 1 천제곱미터) 나. 처분의 경 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•군•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[전문개정 2009.4.24]

## $\square$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
제 13 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(1) 법 제 10 조 및 영 제 7 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•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 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8.6> (2)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 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2.6]

